중재지로서의 싱가포르: 법원과 집행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법원 개입 최소화 정책

중재지의 매력은 상당 부분 그 법원에 달려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일관되게 자신의 역할을 지원과 제한적 감독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2007년 5월 9일 선고된 *Soh Beng Tee & Co Pte Ltd v Fairmount Development Pte Ltd* 사건에서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중재 절차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공격적인 개입은 지연과 근거 없는 이의 제기를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연적 정의의 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위반된 규칙을 특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보여 주며, 중재판정과의 인과관계와 실제 불이익을 입증해야 합니다.[1]

이러한 자제는 싱가포르 중재지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국제중재법에는 법률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항소 제도가 없으므로, 당사자는 중재판정이 본안에 관하여 다시 열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의 개혁 논의는 일부 이용자들이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법률문제 항소를 환영할 것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를 영국 모델에 더 가깝게 만들 것입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소송절차 중지와 중재 가능성

중재지에 대한 첫 시험은 한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무시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찾아옵니다. 2015년 10월 26일 선고된 *Tomolugen Holdings Ltd v Silica Investors Ltd*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section 6에 따른 중지를 검토하는 법원은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하고 그것이 분쟁을 포괄한다는 점을 일응(prima facie)의 기준으로만 확인하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회사법(Companies Act)상 소수주주 억압에 관한 청구는 일반적으로 중재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주주의 상업적 기대에 관한 것이며, 청산에 수반되는 공익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2] 이 판결은 주주간 계약에 중재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은 합작투자와 가족 지주회사에 중요합니다.

2023년 1월 6일 선고된 *Anupam Mittal v Westbridge Ventures II Investment Holdings*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중재 가능성에 대한 접근법을 정교화했습니다. 중재합의의 준거법에 따라 중재 불가능한 분쟁은 싱가포르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법에 따라 중재 불가능한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경우 모두 section 11의 공서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에 비추어 법원은 싱가포르법이 중재합의를 규율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인도 주주가 국가회사법심판소(National Company Law Tribunal)에 제기한 절차는 중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3] 이 사건은 싱가포르 법원이 당사자 본국에서의 병행 절차로부터 중재합의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보여 줍니다.

중재합의의 준거법

중재합의 자체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아시아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주계약, 중재지, 당사자가 서로 다른 법체계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016년 11월 9일 선고된 *BCY v BCZ* 사건에서 고등법원(High Court)은 명시적 선택, 묵시적 선택, 최밀접 관련성이라는 3단계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중재지가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주계약에 선택된 법이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중재합의 준거법의 강력한 지표라고 판시했습니다.[4] 2025년의 의견수렴은 이러한 판례법상 규칙을 법정 규칙으로 대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경우 2025년 영국 중재법을 따를지를 물었습니다.

중재판정 취소: 사유와 그 한계

싱가포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싱가포르 법원에서만, 그리고 제한된 사유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모델법 제34조의 사유로, 행위능력 결여, 합의의 무효, 통지 결여, 관할 일탈,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 공서 위반 등이 있습니다. Section 24는 여기에 두 가지를 추가합니다. 사기 또는 부패로 유도되거나 영향을 받은 중재판정, 그리고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연적 정의의 위반입니다.[5]

법원은 이러한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Coal & Oil Co LLC v GHCL Ltd*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석탄 공급계약에 관한 SIAC 중재판정의 취소를 거부했습니다. 단독중재인이 최종 서면 제출 후 약 19개월이 지나서야 판정을 내렸는데도 그러했습니다. 법원은 지연만으로는 공서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절차상 위반은 또한 "무의미하거나 기술적이거나 사소한"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6]

법원은 절차의 무결성이 위태로울 때 개입합니다. 2025년 4월 8일 선고된 *DJP v DJO*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인도의 화물철도 계약에 관한,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한 ICC 중재판정의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이 중재판정의 451개 문단 중 적어도 212개는 같은 의장중재인이 주재한 두 건의 병행 중재의 판정에서 옮겨온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공정한 관찰자라면 예단을 의심할 것이며, 당사자들이 볼 수 없었던 자료에 관해 공정한 심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고, 공동중재인들이 의장과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7] 이 판결은 중재판정부가 눈앞의 사건을 판단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개입 원칙도 끝난다는 신호로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싱가포르 중재판정의 집행과 구제수단의 선택

싱가포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싱가포르에서는 section 19에 따라, 해외에서는 뉴욕협약에 따라 집행됩니다. 2013년 10월 31일 선고된 *PT First Media TBK v Astro Nusantara International BV*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중재지에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다투지 않은 당사자의 지위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모델법이 "구제수단의 선택(choice of remedies)"에 기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그 집행에 저항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중재판정에 대해서도 제36조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8]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미디어 그룹 간의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싱가포르 법원이 집행 단계에서도 관할권에 관한 이의를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외국 중재판정과 뉴욕협약

국제중재법 Part 3은 외국 중재판정을 규율합니다. 외국 중재판정은 인증된 중재판정, 중재합의,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인증된 영어 번역본을 제출하면 소송을 통해 또는 싱가포르 중재판정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은 뉴욕협약 제5조를 그대로 옮긴 section 31에 열거된 사유로만 거부될 수 있습니다.[9] 이러한 사유에는 합의의 무효, 적절한 통지의 결여, 권한 일탈, 절차상 하자, 중재지에서의 중재판정 취소, 중재 불가능성, 공서 위반이 포함됩니다.

금융중심지에 이 기능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채무자가 싱가포르에 은행 계좌, 주식 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런던, 파리 또는 홍콩의 중재판정을 가진 채권자들이 집행을 위해 싱가포르로 옵니다. 최근 판결들은 이러한 효력 범위를 국가에까지 확장했습니다. 2025년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은 러시아연방을 상대로 한 유코스(Yukos) 중재판정 3건의 집행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6년 고등법원은 스페인이 ICSID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ICSID 중재판정의 승인에 관하여 싱가포르 법원의 관할권에 복종했다고 판시했습니다.[10]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집행 신청을 점점 더 많이 심리하고 있습니다. *DJP v DJO* 사건은 1심에서 이 법원의 판사들이, 항소심에서는 국제판사인 뉴버거 경(Lord Neuberger)이 참여한 항소법원이 심리했습니다. SICC의 구조, 외국인 판사, 외국 변호사에 관한 규칙은 제F편 제III장에서 검토합니다.

주

1. *Soh Beng Tee & Co Pte Ltd v Fairmount Development Pte Ltd* [2007] SGCA 28, 2007년 5월 9일(Chan Sek Keong CJ, Andrew Phang Boon Leong JA, V K Rajah JA), [59] 및 [62]; *Soh Beng Tee*(앞의 주), [29], [73] 및 [86]. ↩

2. *Tomolugen Holdings Ltd v Silica Investors Ltd* [2015] SGCA 57, 2015년 10월 26일(Sundaresh Menon CJ, Chao Hick Tin JA, Chan Sek Keong SJ), [63]–[64], [70], [84], [88] 및 [97]. ↩

3. *Anupam Mittal v Westbridge Ventures II Investment Holdings* [2023] SGCA 1, 2023년 1월 6일(Sundaresh Menon CJ, Judith Prakash JCA, Steven Chong JCA), [55] 및 [60](“composite” 접근법); *Anupam Mittal*(앞의 주), [75] 및 [96]. ↩

4. *BCY v BCZ* [2016] SGHC 249, 2016년 11월 9일(Steven Chong J), [40], [49] 및 [65]. ↩

5.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1994, s 24(a)–(b), “in addition to the grounds set out in Article 34(2) of the Model Law”. ↩

6. *Coal & Oil Co LLC v GHCL Ltd* [2015] SGHC 65, 2015년 3월 12일(Steven Chong J), [51], [63] 및 [75]. ↩

7. *DJP and others v DJO* [2025] SGCA(I) 2, 2025년 4월 8일(Sundaresh Menon CJ, Steven Chong JCA, David Edmond Neuberger IJ), [61], [70], [74]–[76] 및 [80]–[83]; *DJO v DJP* [2024] SGHC(I) 24에 대한 항소.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8. *PT First Media TBK v Astro Nusantara International BV* [2013] SGCA 57, 2013년 10월 31일(Sundaresh Menon CJ, V K Rajah JA, Judith Prakash J), [65], [74] 및 [99]. ↩

9.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1994, ss 29(1), 30(1) 및 31(1)–(4): 열거된 경우에는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나 "but not otherwise". ↩

10. Global Arbitration Review, *The Asia-Pacific Arbitration Review 2027*(앞의 주), *Hulley Enterprises Ltd v The Russian Federation* [2025] SGHC(I) 19 및 *NextEra Energy Global Holdings BV v Kingdom of Spain* [2026] SGHC 43에 관하여.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